

2026년도 제1회 해남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임용시험 공고

2026년도 제1회 해남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31일

해남군의회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 분야 및 주요 직무

□ 임용예정분야 · 직급 · 인원

임 용 분 야	임 용 예 정 급	인 원	기 간	근 무 시 간	임 용 예 정 서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1일 8시간 (주 40시간)	의회사무과

※ 임용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 규정에 따라 연장 가능

□ 주요 직무내용

구 분	임용예정 분야	임 용 예 정 급	직무 내용
일반 임기제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	○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활동 지원 ○ 의원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 및 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군정질의서 작성 등 관련 자료 취합 ○ 의원 연구단체,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지원 ○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분석·조사 및 의정 활동 지원

2 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7조(신규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응시연령: 18세 이상 (2008. 12. 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 및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이하 “협회”라 한다)

□ 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정책지원관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포함), 연구소, 법인·민간기관 등에서 법무, 행정, 예산, 결산, 재정분석, 감사, 정책개발, 정책분석 관련 실무경력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 및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cleaneye.go.kr)기준 ** 2026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행정안전부)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세부 기준

1. 경력증명서로 확인된 경력으로 해당 증명서에 근무기간·담당업무·직위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요건의 증명이 불명확한 경우 실무경력 불인정)
2. 책임소재가 명확한 담당자급 이상의 경력에 한하여 인정(사무보조·단순노무 등의 경력 불인정):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인정
3. 주 40시간 미만 근무경력은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4.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한시임기제공무원: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5. 경력 기간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6.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으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한 '폐업사실확인서',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과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4 임 용 조 건

□ 계약기간: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

-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 임기는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 보수기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 연봉책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70,782천원	50,272천원

-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 험 방 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당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서류전형 결과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1회 이상) 후 시험절차를 진행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평가
-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중·하로 위원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평정요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 | |
|---------------------|-----------------|
|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 최종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 “하”로 평정 하였거나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 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중도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 시험일정

모 집 공 고	응 시 원 서 접 수 기 간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일	최 종 합 격 자 발 표 일
'26. 8. 31.(월) ~ 9. 11.(금)	'26. 9. 14.(월) ~ 9. 16.(수)	'26. 9. 21.(월) (예 정)	'26. 10. 1.(목) (예 정)	'26. 10. 7.(수) (예 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합격자 발표방법: 해남군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haenam.go.kr) '공지 사항'에 공고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시험일정은 서류검증, 기관 사정(재공고 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9. 14.(월) ~ 2026. 9. 16.(수)
 - ※ 접수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접수 불가]

- 접 수 처: (우)590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군청길 4,
해남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 인사담당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FAX · 이메일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까지 인정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토 겉표지에 '해남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주소: (우)590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군청길 4, 해남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 인사담당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e-mail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 원본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우편접수 후 반드시 인사담당자에게 사전 유선 연락 실시(061-530-5496)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구입(받을 분 기재 금지) 후 제출서류와 동봉하여 등기우편 접수 ※ 정부수입인지 불가

7 | 제 출 서 류

구 분	내 용	비 고
1. 제출서류목록	○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이하 제출서류 맨 앞에 합철하여 제출(이하 제출서류 순서대로 배치)	별지 제1호
2. 응시원서 1부	○ 블라인드(정보가림) 채용을 위해 사진은 응시원서에 부착하지 않고 별도 제출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 응시수수료[7급(상당): 7,000원]: 해남군 수입증지 첨부 ※ 구입처: 해남군청(1층) 민원토지과 ※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 구입 후 동봉 (받을 분은 공란으로 작성,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별지 제2호

	○ 응시원서 접수 당시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 하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3.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 기재 금지	별지 제3호
4. 자기소개서 1부	○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별지 제4호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별지 제5호
6.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7.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관련분야 자격증(자격요건 증명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8.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성명·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발급기관(단체)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시간제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되며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재직사실만을 확인 가능한 단순 재직증명서는 경력사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법인 근무경력의 경우 기관성격(업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법인등록증 등)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폐업일 경우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9.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10. 최종학교 졸업(학위) 증명서 1부	○ 석사 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11. 동의서 각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12.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별지 제8호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만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 내의 서류여야 함
-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문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응시자격요건과 무관한 자격증, 확인서, 증명서 등 제출 불필요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 접수 취소 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 서류에 기재된 내용(학력,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응시자는 기제출 서류로 같음)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면접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우리 의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내용을 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해남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061-530-5496)